

6. 정부형태

- ▲의원내각제는 국민의 선거로 입법부가 구성된다.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
- ▲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.
- ▲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므로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.
- ▲의원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가 용이하다.
- ▲선거결과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.
- ▲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▲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립내각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.
- ▲의원내각제에서 과반정당이 없는 경우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다당제의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.
- ▲의원내각제에서 과반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.
- ▲과반정당이 있어 단독내각 구성이 가능한 경우 집권 내각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.
- ▲과반정당이 없어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경우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.
- ▲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를 동일인물이 담당하지 않는다.
- ▲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단독 정당 또는 복수의 정당연합의 대표가 맡는다.
- ▲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대야소보다 여소야대일 경우에 높을 것이다.
- ▲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의 의회해산권 행사가능성은 행정부 수반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경우인 단독 내각 보다 연립 내각(행정부 수반 정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)에서 높을 것이다.
- ▲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과반수 정당이 아닌 경우 대통령제 정부형태로 보아야 한다.
- ▲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.

7. 국회

- ▲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.
- ▲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- ▲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에 의해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하여 발의 되어야 한다.
- ▲ 헌법 개정에서 공고와 공포는 모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.
- ▲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.
- ▲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.
- ▲ 원내 진출 정당수와 교섭단체의 수는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.
 - 소수정당 연합에 의한 교섭단체 구성 가능
- ▲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모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▲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▲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 공포 후 20일이 지나 확정된다.
- ▲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▲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이후 20일이 도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하지만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- ▲ 이송된 법률제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하여야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통하여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- ▲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지만 거부권 행사를 통하여 재의결시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2/3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.
- ▲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 이후 이루어진다.
- ▲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.
- ▲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은 행정부가 가진다. → 국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한다(×)
- ▲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결산 심사권은 국회에 있지만 결산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에 속한다.
- ▲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원회 3인에 대한 선출권을 지닌다.
- ▲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▲ 국회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한다.

8. 행정부

- ▲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(의결기관×)이다.
- ▲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대부분 국회의원과 겹치지 가능한데,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.
- ▲ 대통령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3인(9인×)을 임명한다.
- ▲ 대통령은 헌법 재판관 9인을 임명한다.
- ▲ 대통령은 **국회의 동의를 얻어** 대법관을 임명한다.
- ▲ 대통령의 중요 국정상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.
- ▲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지만(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)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▲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▲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권한 중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.
- ▲ 대통령의 국회 동의를 통한 헌법재판소장, 국무총리, 대법원장, 감사원장의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.
- ▲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모두를 임명하지만, 법원의 구성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만을 임명한다.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
- ▲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은 대통령의 권한 중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.
- ▲ 국무회의는 모든 국정상황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.
- ▲ 국가 중요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▲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세입세출 심사와 달리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권한을 행사한다.

9. 법원

- ▲ 행정법원은 1심에 해당하는 지방법원급이지만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에 해당하는 법원이다.
- ▲ 대통령, 국회의원, 광역자치단체장, 광역 비례대표의원의 선거재판의 1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.
- ▲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다.
- ▲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하는지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는 각급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최종심사는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.
- ▲ 법원의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(입법부×)를 견제하는 수단이다.
- ▲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.
- ▲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결과를 달리하게 될 때 각급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.
- ▲ 법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▲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에,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해야 한다.
- ▲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 규범에 상하의 위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.

10. 헌법재판소

- ▲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.
- ▲ 정부(국회×)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한다.
- ▲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▲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▲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,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. →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9인의 재판관을 임명(×)
- ▲ 대통령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.
- ▲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유형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이다.
- 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 수단을 거친 이후에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. 따라서 행정소송에 따라 행해진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.
- ▲ 당해 사건 담당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심급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.
- ▲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과 달리 헌법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 소추 될 수 있다.
- ▲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, 피해의 최소성, 이익의 균형성, 수단의 적합성 등의 비례의 원칙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다.

11. 지방자치

- ▲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다.
- ▲ 서울시 강남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효력은 서울시 강남구에만 미친다.
- ▲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▲ 주민투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다.
- ▲ 지역주민이 조례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으로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권이다.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권은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다.
- ▲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조례에 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의회*)에 청구할 수 있다.
- ▲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행한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 의원(비례대표 의원*)에 대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.
- ▲ 직무를 태만한 광역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(지방의회*)에 청구할 수 있다.
- 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단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치단체의 주민은 관계장관에게, 기초 자치단체라면 광역자치단체장(광역의회*)에 각각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▲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심의 의결 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.
- ▲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 직접 참여제도에 해당한다.
- ▲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.